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2년 01월 0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2년 01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총액: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16년 4월 14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는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2.01.03)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BC604]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외 채권관련 ETF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쿼터백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글로벌 주식 및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통화, 리츠(부동산) 및 다양한 대안투자 자산군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분산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0.7%이내	1.26	0.50	1.02	1.3377	216	370	531	879	1,9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1.46	0.70	1.38	1.5371	168	344	530	928	2,11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35%이내	1.01	0.25	0.65	1.0871	156	284	418	706	1,5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1	0.35	0.89	1.1872	132	271	416	730	1,66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0.05.07~2021.05.06	최근 2년 2019.05.07~2021.05.06	최근 3년 2018.05.07~2021.05.06	최근 5년 2016.05.07~2021.05.06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2016.04.18	9.91	7.42	5.15	3.52	3.46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6.04.20	10.18	7.69	5.41	3.78	3.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16.04.18	9.69	7.21	4.95	3.32	3.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6.04.20	10.07	7.58	5.31	3.67	3.62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2016.04.18	5.05	7.81	6.95	6.37	6.34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도윤	1983	팀장	-	-	-	-	11.08	8.93	0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2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특별자산 등의 지수에 연동하는 ETF 및 리츠(부동산)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ETF 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 펀드자산의 가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및 기타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해당국의 증권시장 법령, 세제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데이터 분석 및 투자대상 종목 선별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한 계량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 모델의 경우 과거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계량 모델에 따른 전략을 수행할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계량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시장상황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 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 70~100% 수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	· **오후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오후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별도로 정해진 총좌수 없음
효력발생일	2022년 01월 20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table>
<tr><td></td><td>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 (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td></tr>
<tr><td>수수료후취</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 (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6">기타</td><td>무권유 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 (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 (F)</td><td>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td><td>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8
3. 모집예정금액 8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8
5. 인수에 관한 사항 8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9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0
4. 집합투자업자 1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6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8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35
1. 재무정보 3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5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47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7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8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8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8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0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5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6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6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56
[붙임] 용어풀이 57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BC60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BC605
수수료선취-온라인 (A-e)	BC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BC6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C6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BC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C6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BC6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BC6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C6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D1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Q9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Q9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BV7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BV7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B36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고난도금융투자상품[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6년 4월 14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BC60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BC605
수수료선취-온라인 (A-e)	BC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BC6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C6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BC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C6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BC6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BC6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C6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D14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Q9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Q9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BV7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BV7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B36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04.18.	- 최초 설정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11.10	- 클래스 명칭 명확화(C-P2 → C-P2(퇴직연금))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04.01 시행)
2017.02.03	- 매입 청구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17시 이전: 2영업일 → 3영업일, 17시 경과 후: 3영업일 → 4영업일)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하향 조정)
2017.05.25	- 환매 청구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17시 이전: 3영업일 → 4영업일, 17시 경과 후: 4영업일 → 5영업일) - Class AG 수익증권 및 CG 수익증권 신설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7.08.16	- Class C-Pe, C-P2e(퇴직연금) 신설
2018.06.22	- 투자신탁 명칭 변경(키움 쿼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키움쿼터백글로벌EMP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4.29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 → 실제 수익률 변동성)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8.07	- 운용전문인력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2019.09.20	-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0.05.27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반영 -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20.09.25	- Class S-P2(퇴직연금) 신설
2021.05.18	- 파생결합증권 투자 삭제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01.20	- 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협 → 김도윤)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에는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

② 투자자문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종목(ETF)의 추천
-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 전망에 관한 조언
-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의 제공

③ 이 투자신탁은 현재(2016년 4월) '쿼터백 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④ 회사의 개요

회사명	쿼터백자산운용 주식회사(QUARTERBACK INVESTMENTS Co., Ltd)
설립일	2015.06.04
자본금	90억 원 (2018.12.31 기준)
사업개요	쿼터백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서비스 제공 하도록 승인을 받은 업체로, 빅데이터 분석, 최적의 자산군 선정, 상관관계 분석, 포지션 선정, 성과분석, 리스크 관리의 투자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
홈페이지 주소	http://www.qbinvestments.com

주1) 투자자문회사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2.01.03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도윤	1983	팀장	-	-	-	-	11.08	8.93	*운용경력: 0년 0개월 (2009.05 ~ 2012.05) 한화투자증권 전략운용팀 (2012.11 ~ 2020.09) 신영증권 자산운용부 (2020.10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 ETF운용2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제우	설정일 ~ 2019.08.
	김재우	2019.08 ~ 2019.09
	김종협	2019.09. ~ 2022.01.
	김도윤	2022.01.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키움쿼터백글로벌 EMP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2)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1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 17조에서 정의된 국내외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채권형 ETF에 50%이상을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형 ETF 및 대안상품(원자재, 통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에 분산투자 합니다.
- 주로 미국시장에 상장된 ETF를 활용할 예정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량, Tracking error 허용 범위, 보수 한도, 시장환율변화 등의 ETF 선택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미국 외 시장에 있는 경우, 유럽, 홍콩, 싱가폴, 한국 등 다양한 지역의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선정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다만, 채권형 ETF 에 50% 이상)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합니다.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50% 미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1. 및 2.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7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9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집합투자규약 제17조의 투자대상자산 중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 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ETF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ETF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전통적 자산인 글로벌 주식 및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 통화, 리츠(부동산) 및 다양한 대안투자 자산군의 ETF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은 '쿼터백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경제, 자산시장, 정치 및 정책 등 투자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고유의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④ 주로 미국시장에 상장된 ETF를 활용할 예정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량, Tracking error허용 범위, 보수 한도, 시장환율변화 등의 ETF 선택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미국외 시장에 있는 경우, 유럽, 홍콩, 싱가폴, 한국 등 다양한 지역의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선정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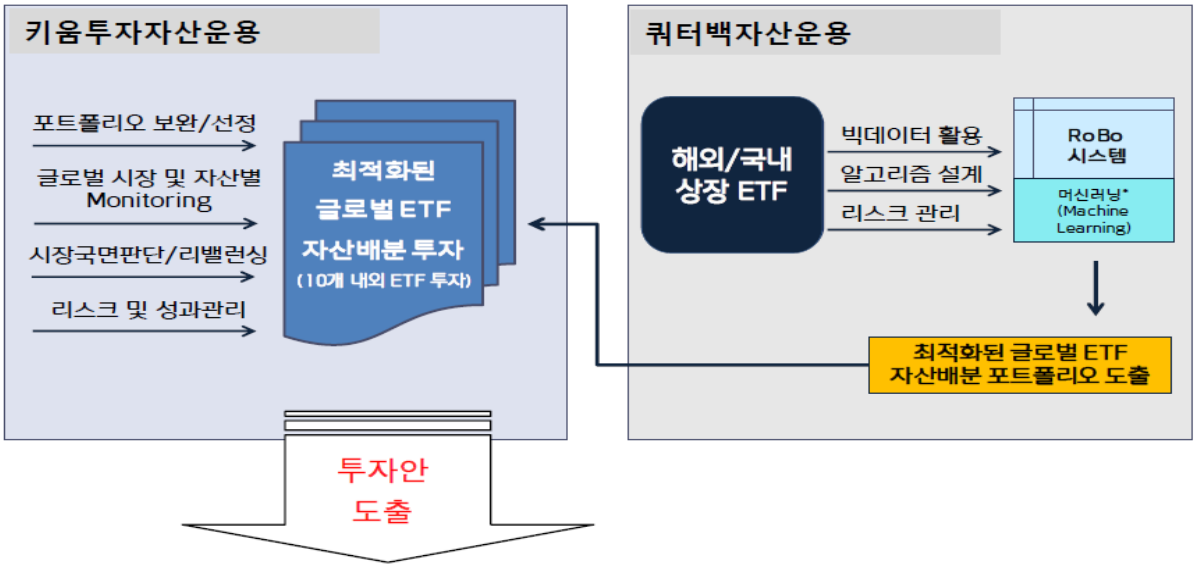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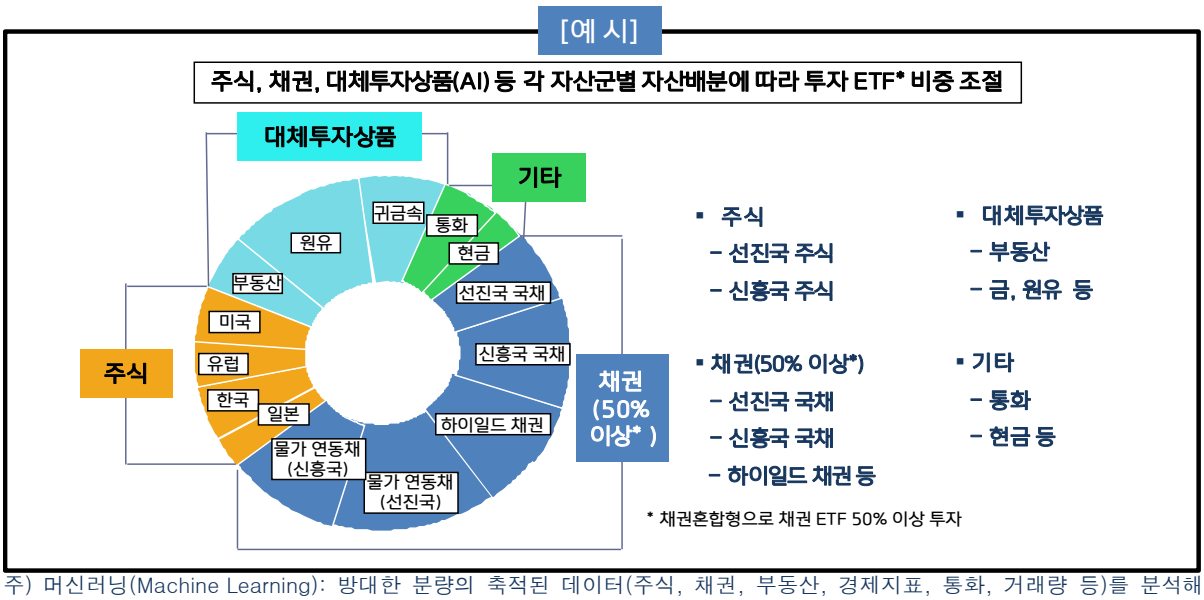

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대한 분량의 축적된 데이터(주식, 채권, 부동산, 경제지표, 통화, 거래량 등)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학습이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과거 데이터에서 숨겨진 특성, 패턴 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고,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어 학습한 후,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6개 자산군과 77개 지역의 시장과 국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자산배분을 실시합니다.
–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관련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매니저의 직관 및 개인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합니다.
– 키움 투자자산의 투자모델의 검증을 통해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ETF 포트폴리오 유니버스 예시

Ticker	펀드명	유형	설정일	운용 규모*	펀드 총비용*
TLT US equity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채권	`02-07-26	12,505	0.15%
SHY US equity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	채권	`02-07-26	19,559	0.15%
EMB US equity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Bond ETF	채권	`07-12-19	15,507	0.40%
BND US equity	VANGUARD TOTAL BOND MARKET ETF	채권	`07-04-10	37,885	0.06%
PCY US equity	Invesco Emerging Markets Sovereign Debt Portfolio	채권	`07-10-11	3,249	0.50%
SPY US equity	SPDR S&P 500 ETF TRUST	주식	`93-01-22	277,724	0.09%
EWJ US equity	ISHARES MSCI JAPAN ETF	주식	`96-03-18	14,297	0.48%
EWG US equity	ISHARES MSCI GERMANY ETF	주식	`96-03-18	2,573	0.48%
GLD US equity	SPDR GOLD SHARES	대안 투자	`04-11-18	30,822	0.40%
USO US equity	UNITED STATES OIL FUND LP	대안 투자	`06-04-10	1,500	0.72%

* Bloomberg 참고(2019.04.22, 백만 USD 기준)
주1) 상기 예시는 초기 투자대상 안으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유니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① 이 투자신탁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의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부분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②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외화표시 자산 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100% 수준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 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 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④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인 채권, 주식 및 대체 투자 상품 관련 ETF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특별자산 등의 지수에 연동하는 ETF 및 리츠(부동산) 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ETF 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 펀드자산의 가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 및 기타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해당국의 증권시장 법령, 세제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에 투자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변경위험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키움 단기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량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별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한 계량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계량 모델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 모델의 경우 과거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계량 모델에 따른 전략을 수행할 경우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계량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시장 상황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 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위험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발행 기업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집중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국가별 분산투자를 기본 투자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대상국가 증권시장의 가치가 다른 국가의 시장에 비해 크게 증가하거나 투자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당해 국가에 대한 투자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 증가로 인해 당해 국가의 부정적 사건 등이 발생시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 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 제어 및 헤지목적으로 스왑, 선도, 또는 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성과 제어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가격이 계약 시 가격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투자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규나 제도에 의해 법률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채권(채권 관련 ETF)에 투자함으로써 그 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 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하위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집합투자기구뿐 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7.35%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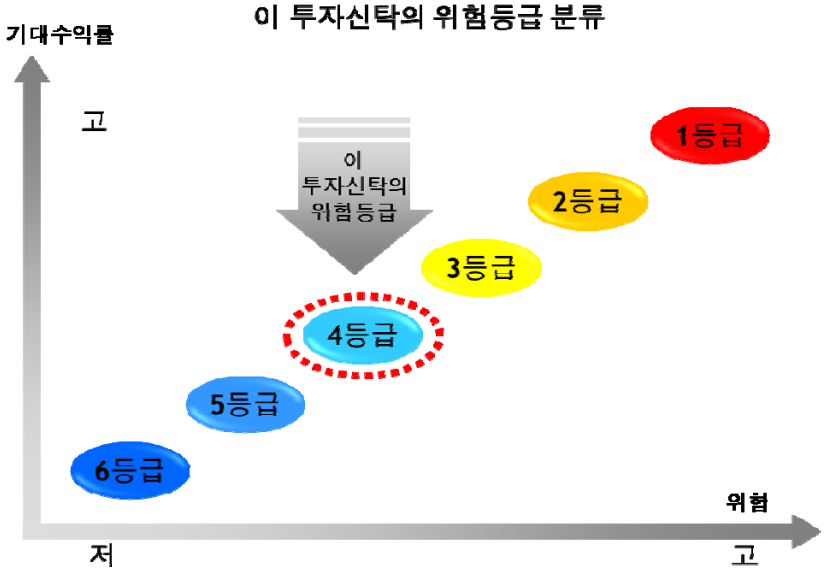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C-F)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합니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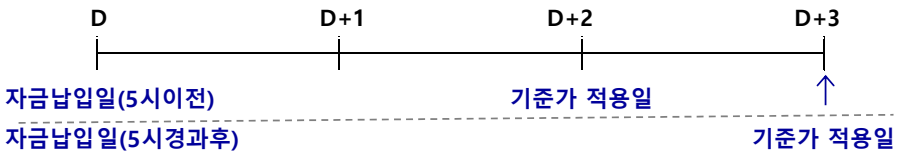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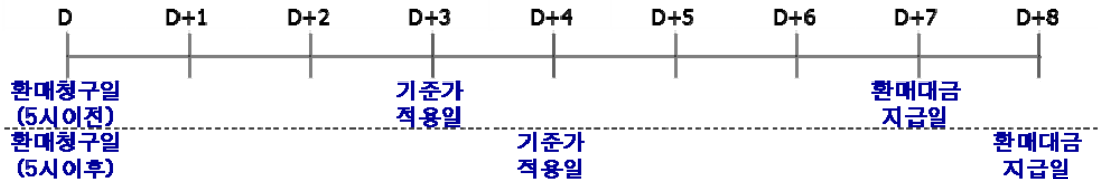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매청구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사.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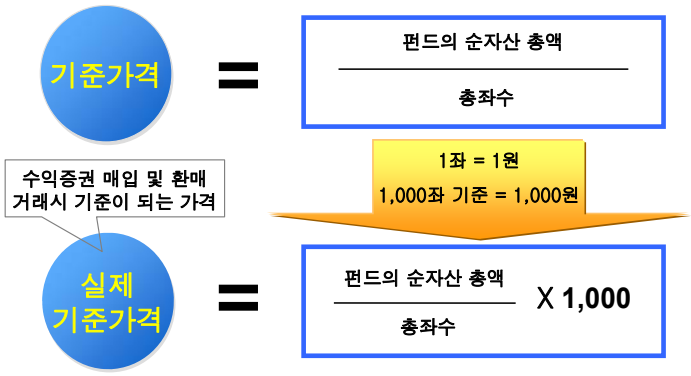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인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납입금액의 0.3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가입제한 없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주 2) 참조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주 3) 참조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합니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	-	-	-	-

(CP2e(퇴직연금))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Class C-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2.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주3) Class C-W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2.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4.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0.7000	0.5000	0.0350	0.0250	1.2600	1.0200	0.0777	1.3377	1.4391	0.315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7000	0.2500	0.0350	0.0250	1.0100	0.6500	0.0771	1.0871	1.1885	0.31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0.7000	0.7000	0.0350	0.0250	1.4600	1.3800	0.0771	1.5371	1.6385	0.32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7000	0.3500	0.0350	0.0250	1.1100	0.8900	0.0772	1.1872	1.2886	0.3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0.7000	0.0300	0.0350	0.0250	0.7900	-	0.0778	0.8678	0.9692	0.32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50	0.0250	0.7600	-	0.0778	0.8378	0.9392	0.32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0.7000	0.4500	0.0350	0.0250	1.2100	-	0.0774	1.2874	1.3889	0.31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0.7000	0.4000	0.0350	0.0250	1.1600	-	0.0776	1.2376	1.3391	0.31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7000	0.2000	0.0350	0.0250	0.9600	-	0.0767	1.0367	1.1381	0.2873
수수료미징구-온	0.7000	0.1600	0.0350	0.0250	0.9200	-	0.0770	0.9970	1.0985	0.2497

라인슈퍼-개인연금 (S-P)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7000	0.3700	0.0350	0.0250	1.1300	-	-	1.1300	1.13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7000	0.5200	0.0350	0.0250	1.2800	-	-	1.2800	1.28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0.7000	0.2200	0.0350	0.0250	0.9800	-	0.0764	1.0564	1.1579	0.30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퇴직연금))	0.7000	0.2000	0.0350	0.0250	0.9600	-	0.0775	1.0375	1.1390	0.30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0.7000	0.1500	0.0350	0.0250	0.9100	-	0.0778	0.9878	1.0892	0.2655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로 쿼터백자산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문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하며 0.35%의 수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합니다.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0.04.18 ~ 2021.04.17]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0.04.18 ~ 2021.04.17]

주3)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투자신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하 "ETF")등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ETF(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ETF(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수수료는 약 0.14%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06	349	499	822	1,78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6	370	531	879	1,912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6	263	385	648	1,43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6	284	418	706	1,5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8	323	497	871	1,98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8	344	530	928	2,1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2	249	384	672	1,531

(C-e)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2	271	416	730	1,6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9	182	280	492	1,11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9	204	313	549	1,2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6	176	271	475	1,08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6	197	304	532	1,2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2	271	416	729	1,66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2	292	449	787	1,7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7	260	400	701	1,59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7	281	433	758	1,7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218	335	587	1,33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7	239	368	645	1,4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2	210	322	565	1,28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3	231	355	622	1,4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8	222	341	598	1,36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9	243	374	656	1,4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6	218	335	588	1,33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7	239	368	645	1,46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8	319	559	1,27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2	229	352	617	1,404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1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7%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3)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3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3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5) 종류별로(A1, C1-C2-C3-C4)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1월 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S-P, C-Pe 수익증권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 (2020.04.18 ~ 2021.04.1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4기 (2019.04.18 ~ 2020.04.1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3기 (2018.04.18 ~ 2019.04.1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 기 (2021.04.17)	제4기 (2020.04.17)	제3기 (2019.04.17)
운용자산	13,282,110,629	8,512,869,900	10,830,537,669
증권	12,596,162,699	8,135,481,017	10,287,047,560
파생상품	-10,326,193	-59,177,214	-100,234,607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79,966,413	406,535,747	636,522,222
기타 운용자산	16,307,710	30,030,350	7,202,494
기타자산	18,032,835	98,886,820	6,405,301
자산총계	13,300,143,464	8,611,756,720	10,836,942,970
운용부채	-7,479	-5,543	195
기타부채	25,579,337	25,862,327	106,867,068
부채총계	25,571,858	25,856,784	106,867,263
원본	11,475,027,435	8,100,449,668	10,552,165,213
수익조정금	503,025,912	-217,218,532	-21,743,658
이익잉여금	1,296,518,259	702,668,800	199,654,152
자본총계	13,274,571,606	8,585,899,936	10,730,075,70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2020.04.18 ~ 2021.04.17)	제4기 (2019.04.18 ~ 2020.04.17)	제3기 (2018.04.18 ~ 2019.04.17)
운용수익	1,481,076,742	956,901,891	141,637,937
이자수익	1,192,310	5,688,041	7,324,910
배당수익	124,364,573	215,153,387	308,273,676
매매/평가차익(손)	1,355,519,859	736,060,463	-173,960,649
기타수익	16,321,938	34,981,695	7,872,651
운용비용	-4,109,600	-1,462,400	-1,732,8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4,109,600	-1,462,400	-1,732,800

기타비용	-24,533,099	-37,876,021	-50,718,551
당기순이익	1,468,755,981	952,545,165	97,059,237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0)%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5기(2021.04.17) 금 액		제4기(2020.04.17) 금 액		제3기(2019.04.17)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79,966,413		406,535,747		636,522,222
1. 현금및현금성자산	407,932,878		321,424,623		620,245,162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272,033,535		85,111,124		16,277,06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2,596,162,699		8,135,481,017		10,287,047,560
1. 지분증권	0		0		426,000,862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12,596,162,699		8,135,481,017		9,861,046,698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10,326,193		-59,177,214		-100,234,607
1. 파생상품	-10,326,193		-59,177,214		-100,234,607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34,340,545		128,917,170		13,607,79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360,000		89,943,337		504,00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55,815		41,463		332,339	
4. 미수배당금	8,710,610		9,257,253		5,555,712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16,214,120		29,675,117		7,215,744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3,300,143,464		8,611,756,720		10,836,942,970
부 채						
운 용 부 채		-7,479		-5,543		195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7,479		-5,543		195	
기 타 부 채		25,579,337		25,862,327		106,867,06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24,704,075		24,812,092		106,413,084	
4. 수수료미지급금	875,262		1,050,235		453,984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25,571,858		25,856,784		106,867,263
자 본						
1. 원 본	11,475,027,435		8,100,449,668		10,552,165,21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03,025,912		-217,218,532		-21,743,658	
3. 이월잉여금	1,296,518,259		702,668,800		199,654,152	
(발행좌수 당기: 11,475,027,435 좌	이익잉여금	1,296,518,259		702,668,800		199,654,152
전기: 8,100,449,668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10,552,165,213 좌)						
(기준가격 당기: 1,156.82 원						
전기: 1,059.93 원						
전전기: 1,016.86 원)						
자 본 총 계		13,274,571,606		8,585,899,936		10,730,075,70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300,143,464		8,611,756,720		10,836,942,970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5기(2020.04.18 ~ 2021.04.17)		제4기(2019.04.18 ~ 2020.04.17)		제3기(2018.04.18 ~ 2019.04.1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25,571,111		225,792,773		316,268,743
1. 이 자 수 익	1,192,310		5,688,041		7,324,910	
2. 배당금수익	124,364,573		215,153,387		308,273,676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14,228		4,951,345		670,157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395,011,528		2,713,679,955		1,854,071,724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194,861,25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345,157,722		997,065,893		196,137,588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884,453,000		622,027,000		500,015,000	
6. 외환거래/평가차익	149,093,096		1,064,556,712		955,855,392	
7. 기타차익	16,307,710		30,030,350		7,202,49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023,183,959		1,947,589,142		2,020,829,87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43,220,037		257,185,680		381,615,825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324,079,193		1,532,656,214		1,409,981,607	
6. 외환거래/평가차손	655,884,729		157,747,248		229,232,447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28,642,699		39,338,421		52,451,351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11,170,109		6,542,741		6,063,646	
6. 기타비용	17,472,590		32,795,680		46,387,70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468,755,981		952,545,165		97,059,23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27995858		0.11759164		0.0091980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가.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81.00	83.69	118.73	130.42	84.99	92.15	114.75	131.10
2019.04.18 ~ 2020.04.17	105.52	105.52	48.34	49.61	72.86	75.54	81.00	83.69
2018.04.18 ~ 2019.04.17	155.07	156.78	58.70	58.91	108.24	109.15	105.52	105.52

나.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11.03	11.40	20.53	22.22	21.38	23.30	10.19	11.64
2019.04.18 ~ 2020.04.17	21.21	21.22	4.25	4.37	14.54	14.88	11.03	11.40
2018.04.18 ~ 2019.04.17	64.08	64.81	7.97	7.98	50.88	51.28	21.21	21.22

다.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1.06	1.10	6.41	7.10	1.88	2.06	5.58	6.37
2019.04.18 ~ 2020.04.17	1.10	1.10	0.86	0.89	0.91	0.93	1.06	1.10
2018.04.18 ~ 2019.04.17	1.63	1.65	0.55	0.55	1.08	1.07	1.10	1.10

라.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2.49	2.58	1.41	1.55	1.58	1.72	2.34	2.67
2019.04.18 ~ 2020.04.17	3.86	3.87	1.27	1.30	2.64	2.70	2.49	2.58
2018.04.18 ~ 2019.04.17	4.00	4.04	5.76	5.69	5.89	5.86	3.86	3.87

마.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1.98	2.05	7.13	7.81	5.06	5.53	4.07	4.64
2019.04.18 ~ 2020.04.17	2.41	2.41	2.92	3.02	3.36	3.45	1.98	2.05
2018.04.18 ~ 2019.04.17	2.76	2.79	1.01	1.01	1.38	1.38	2.41	2.41

바.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35.97	37.55	9.14	10.04	20.64	22.49	24.49	28.26
2019.04.18 ~ 2020.04.17	66.89	67.57	12.95	13.39	43.97	46.09	35.97	37.55
2018.04.18 ~ 2019.04.17	74.31	75.90	34.12	34.51	41.61	42.16	66.89	67.57

사.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3.32	3.43	0.30	0.33	0.91	1.01	2.71	3.09
2019.04.18 ~ 2020.04.17	4.28	4.28	0.65	0.67	1.61	1.65	3.32	3.43
2018.04.18 ~ 2019.04.17	2.59	2.62	2.87	2.85	1.17	1.17	4.28	4.28

아.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3.12	3.14	5.36	5.67	4.02	4.31	4.47	4.98
2019.04.18 ~ 2020.04.17	5.07	5.04	0.80	0.81	2.75	2.80	3.12	3.14
2018.04.18 ~ 2019.04.17	5.61	5.61	0.94	0.92	1.48	1.46	5.07	5.04

자.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0.25	0.26	5.10	5.66	1.92	2.15	3.40	3.89
2019.04.18 ~ 2020.04.17	0.18	0.18	0.19	0.20	0.12	0.12	0.25	0.26
2018.04.18 ~ 2019.04.17	0.24	0.25	0.03	0.03	0.09	0.09	0.18	0.18

차.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0.23	0.24	6.52	7.34	1.62	1.82	5.13	5.87
2019.04.18 ~ 2020.04.17	0.17	0.17	0.15	0.16	0.09	0.10	0.23	0.24
2018.04.18 ~ 2019.04.17	0.17	0.17	0.04	0.04	0.03	0.04	0.17	0.17

카.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0.46	0.46	1.55	1.64	0.60	0.63	1.46	1.59
2019.04.18 ~ 2020.04.17	0.22	0.22	0.72	0.73	0.48	0.49	0.46	0.46
2018.04.18 ~ 2019.04.17	0.16	0.16	0.07	0.06	0.00	0.00	0.22	0.22

타.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1.72	1.72	10.03	10.65	3.90	4.13	8.00	8.57
2019.04.18 ~ 2020.04.17	0.25	0.24	2.30	2.30	0.82	0.80	1.72	1.72
2018.04.18 ~ 2019.04.17	0.08	0.08	0.25	0.24	0.09	0.08	0.25	0.24

파.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20.00	20.23	45.21	48.40	20.40	21.07	44.81	50.12
2019.04.18 ~ 2020.04.17	0.00	0.00	20.00	20.00	0.00	0.00	20.00	20.23
2018.04.18 ~ 2019.04.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하. 키움쿼터백글로벌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4.18 ~ 2021.04.17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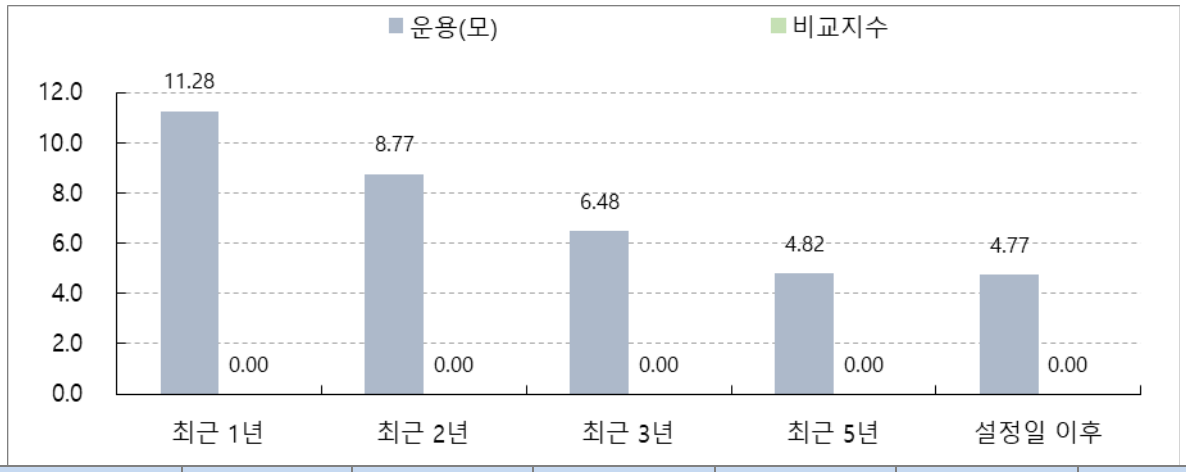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0.05.07~ 2021.05.06	2019.05.07~ 2021.05.06	2018.05.07~ 2021.05.06	2016.05.07~ 2021.05.06	2016.04.18~ 2021.05.06
운용(모)	2016.04.18	11.28	8.77	6.48	4.82	4.77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5.05	7.81	6.95	6.37	6.34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1)	2016.04.18	9.91	7.42	5.15	3.52	3.46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6.04.20	10.18	7.69	5.41	3.78	3.72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2016.04.18	9.69	7.21	4.95	3.32	3.26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6.04.20	10.07	7.58	5.31	3.67	3.62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16.04.25	10.42	-	-	-	7.91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16.05.25	10.45	7.96	5.68	-	4.29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2016.04.20	9.96	7.48	5.21	3.57	3.52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2016.08.09	10.02	7.53	5.26	-	3.30
비교지수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6.05.10	10.23	7.74	5.47	-	3.85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2016.05.09	10.28	7.79	5.51	-	3.88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17.11.24	10.21	7.72	5.45	-	4.11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2018.01.12	10.23	7.74	5.47	-	3.67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2020.11.04	-	-	-	-	14.98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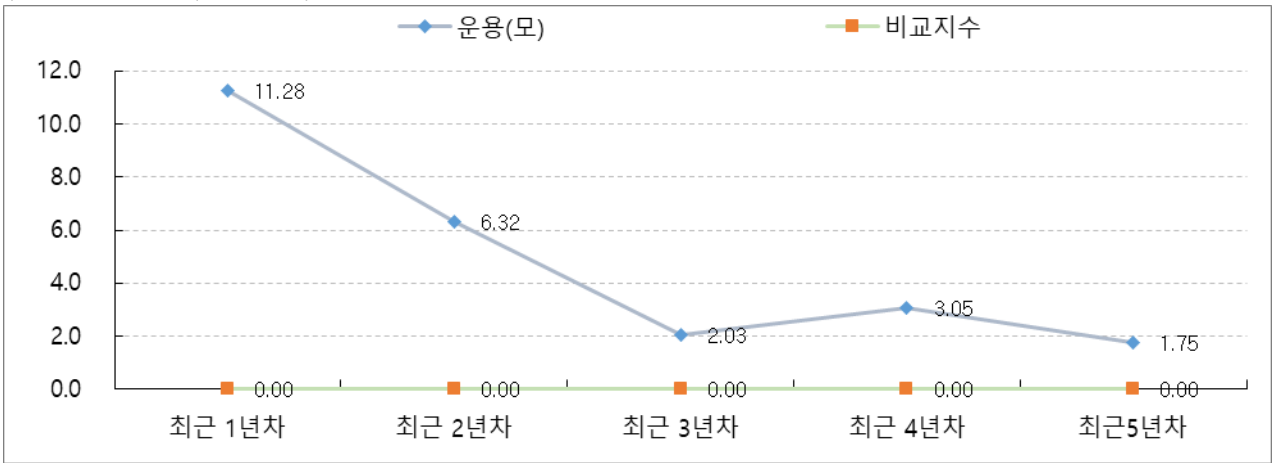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0.05.07~ 2021.05.06	2019.05.07~ 2020.05.06	2018.05.07~ 2019.05.06	2017.05.07~ 2018.05.06	2016.05.07~ 2017.05.06
운용(모)	2016.04.18	11.28	6.32	2.03	3.05	1.75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1)	2016.04.18	9.91	5.00	0.75	1.77	0.47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6.04.20	10.18	5.26	1.01	2.02	0.73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1)	2016.04.18	9.69	4.79	0.55	1.56	0.28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6.04.20	10.07	5.15	0.91	1.92	0.63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2016.04.25	10.42	3.81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2016.05.25	10.45	5.52	1.26	2.27	2.00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2016.04.20	9.96	5.05	0.80	1.82	0.53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2016.08.09	10.02	5.10	0.86	1.87	-1.80
비교지수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6.05.10	10.23	5.31	1.06	2.07	0.86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	2016.05.09	10.28	5.35	1.10	2.11	0.82

인연금 (S-P)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2017.11.24	10.21	5.29	1.04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2018.01.12	10.23	5.31	1.06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2020.11.04	7.29	-	-	-	-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Class C-F :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50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W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11.41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P2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8.91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S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11.90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S-P : 최근 5년차 수익률은 11.93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Pe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P2e(퇴직연금)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S-P2(퇴직연금) : 최근 1년차 수익률은 6.05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3) 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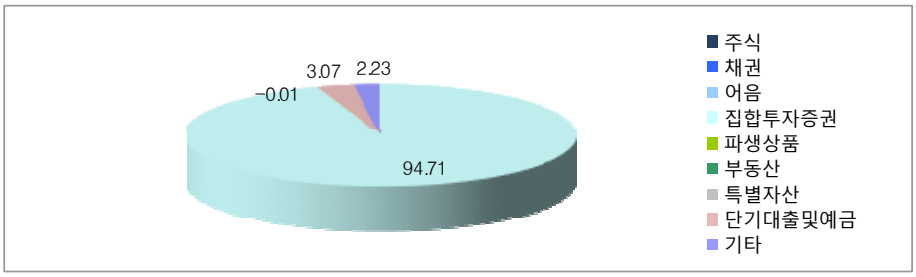

[2021.04.1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126.0	0.1	-0.1	0.0	0.0	0.0	4.1	3.0	133.0
	(0.00)	(0.00)	(0.00)	(94.71)	(0.07)	-(0.08)	(0.00)	(0.00)	(0.00)	(3.07)	(2.23)	(100.00)
KRW	0.0	0.0	0.0	0.0	0.1	0.0	0.0	0.0	0.0	3.4	2.9	6.4
	(0.00)	(0.00)	(0.00)	(0.00)	(1.46)	(0.00)	(0.00)	(0.00)	(0.00)	(53.45)	(45.09)	(100.00)
USD	0.0	0.0	0.0	126.0	0.0	-0.1	0.0	0.0	0.0	0.7	0.1	126.6
	(0.00)	(0.00)	(0.00)	(99.49)	(0.00)	-(0.08)	(0.00)	(0.00)	(0.00)	(0.52)	(0.07)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1.04.17 현재 / 단위 : 억원,%]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달러선물	70.2	100.00%
합계	70.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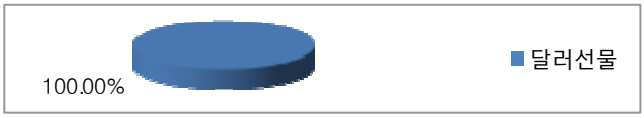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21.04.17 현재 / 단위 : 억원,%]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통화선도	49	100.00%
합계	4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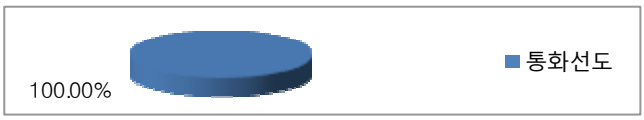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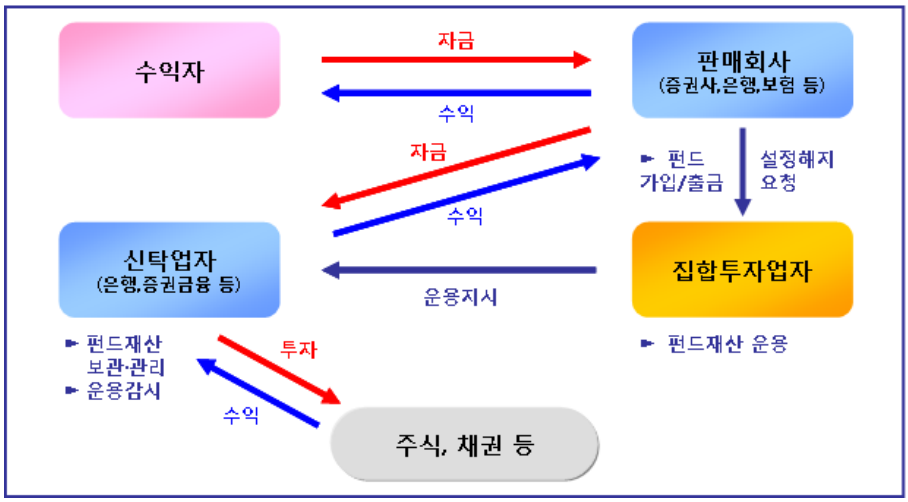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3(당)기 2020.12.31현재	제32(전)기 2019.12.31현재	구분	제33(당)기 2020.01.01 ~ 2020.12.31	제32(전)기 2019.01.01 ~ 2019.12.31
현금및예치금	40	76	영업수익	810	610
증권	1,633	1,330	영업비용	447	377
파생상품자산	-	1	**영업이익**	**363**	**233**
대출채권	37	29	영업외수익	7	3
유형자산	11	14	영업외비용	10	10
사용권자산	51	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8**	**226**
기타자산	144	133	법인세비용	87	52
자산총계	**1,916**	**1,646**	**당기순이익**	**281**	**174**
예수부채	3	3	기타포괄손익	(1)	4
리스부채	46	58	**총포괄손익**	**280**	**178**
기타부채	164	97			
파생상품	-	-			
부채총계	**213**	**158**			
자본금	410	410			
자본잉여금	173	173			
이익잉여금	1,120	9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			
자본총계	**1,702**	**1,488**			
부채및자본총계	**1,916**	**1,646**			

4) 운용자산규모

[2022.01.03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22,496	93,431	2,360	50,442	11,420	42,360	34,915	3,335	92,287	353,045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연락처: 1599-5000 / 1588-5000)
홈페이지	http://www.wooribank.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당사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해외주식	98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